

건축 설계 공모 지침서

-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

2024. 10.

강 북 구 청
[건 축 과]

목 차

I .일반사항

1. 사업개요	4
2. 공모개요	5
3. 제출도서 작성기준	8
4. 제공도서	11
5. 심사 및 입상작 기준	12
6.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기준	15
7. 분쟁	17
8. 기타	17
9. 각종서식	19

II .설계지침

1. 계획 개요	38
2. 대상지 현황	38
3. 실 구성 및 소요면적	39
4. 기본 설계 지침	40

I . 일반사항

1.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 강북구에는 봉제소공인의 분포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에 반해 봉제소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 본 사업은 **강북구 의류봉제업의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과 그에 따른 **소공인 한계 극복**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스마트 제조장비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제품개발, 판로 개척,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한 **소공인 성장을 지원**하여 강북구 특화산업에 대한 자생력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제소공인의 패션 제작(Creative), 창업(Start-up), 자료(Archiving)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강북패션플랫폼(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1) 사업명: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 2)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 3)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0나길6
- 4) 대지면적: 485.3㎡
- 5)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6)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297.0㎡ (주차장면적 포함), 연면적은 ±5% 범위에서 조정 가능
- 7) 공사종별: 신축
- 8) 용도: 공공업무시설

9) 예정공사비: 6,553,252천원(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총 공사비	직접공사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철거공사비	비고
금액 (단위: 백만원)	6,553	6,149	320	84	

10) 설계용역비: 495,81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총 설계비	설계비						부가가치세	비고
		기본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 설계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철거설계	손해배상 공제 가입비		
금액 (단위: 백만원)	496	277	138	22	7	4	2	4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용역비와는 별도로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 후 업무 수행

11)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휴일, 심의·심사·인증·인허가협의 기간 등 모두 포함)

12) 공사기간: 18개월 (준비기간 제외) ※공사기간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3) 철거예정 건축물: 송중문화정보도서관

구분	용도	면적 (단위: ㎡)	비고
도봉로20나길6	도서관	485.3	세멘부록 연와조, 세멘부록
합계		485.3	

14)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전경사진

2. 공모개요

○ 설계공모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설계(안)를 선정함으로써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구성 및 지역 환경과의 조화, 예술성을 갖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여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모방법: 일반 설계공모

○ 공모일정 ※사정으로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예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설계공모공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	공고 시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project.seoul.go.kr, 이하 "프로젝트서울") 게시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명단 설계공모 공고 시 공개
참가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서울 통하여 접수
질의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서울 통하여 질의 접수
질의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서울 통하여 질의회신 게시 ※개별 회신 없음
작품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방법(온라인 및 현장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프로젝트서울 홈페이지 제출 현장접수: 강북구청 1층 건축과(공공건축팀) 접수시간(마감): 당일 17:00까지(온라인은 16:59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시간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접수대상: '참가등록' 및 '구비서류제출' 필한 업체
작품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장소: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당선작)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서울에 일괄 게재 ※ 보상금 지급 관련 별도 통보

○ 참가자격

-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개설 기준일: 참가등록 마감일)하고,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 접수기간 내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체)는 등록불가
-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서식3]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
- 4)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시 1)항,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5) 다만, 현상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소방설계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6)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설계공모 관련 기술위원, 전문위원, 운영위원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자문 등에 참여한 자는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참가등록

- 1) 등록기간: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6:00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17:00
- 2) 등록처: 프로젝트서울(<https://project.seoul.go.kr>)
- 3)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로그인)] → Competition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후 웹사이트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등록
※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등록이 완료되며, 이때 부여 되는 고유식별 번호(이하 ‘PIN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 및 제출 자료를 식별한다.
- 4)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작품접수 시 제출하며, 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참가등록 마감일로 한다. **또한, 작품접수 시 구비서류에서 응모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서식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다.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라. [서식2]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응모인 경우에 한함)

마. 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수행 계약서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함)

바. [서식3]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공동응모 또는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건축사사무소인 경우)

예시)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건축사사무소 A가 다른 업체 B와 공동응모 하는 경우
(이때, 공동응모협정의 대표업체는 A로 가정)

- 대표자 선임계 총 2부 제출

- 업체A: 업체 A의 대표건축사 중 1인의 대표자 선임
- 업체B: 공동응모의 대표로 업체A의 대표건축사를 선임

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필증,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 필)
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류 1부(건축사 협회 또는 등록관청 발급서류, 공고일 이후)
자. [서식4] 보안각서
차.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5) 유의사항

가. 응모등록자에 한하여 질의서 및 작품제출이 가능 함
나.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도 상기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 사, 아'에 해당하는 서류 전부 제출
다. 공동응모의 경우 접수 이후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등록 내용의 변경 및 수정 불가함

○ 질의회신

- 1) 질의기간: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10:00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17:00
- 2) 접 수 처: 프로젝트서울(<https://project.seoul.go.kr>)
- 3) 설계공모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설계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프로젝트서울을 통하여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프로젝트 서울에 일괄 (2024년 11월 14일 예정) 질의 회신한다. ※별도개별 회신없음.
- 4) 질의서에는 반드시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응모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 5)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질의를 하지 않는 응모 신청자도 반드시 질의 답변내용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6) 유의사항
가.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질의서는 접수기한 내 접수 완료분에 한하여 유효함

○ 작품제출

- 1) 제출장소: 프로젝트 서울(온라인), 강북구청 1층 건축과(현장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완료 시 인정
- 2) 제출일시: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10:00 ~ 17:00
- 3) 제출서류: [서식 6]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온라인 제출확인서(프로젝트서울에 제출 후 출력가능)
- 4) 제출물
가. 심사용 설계도판 1세트[A1(가로 594mm × 세로 841mm) × 2매]
나. 설계도면: 심사용 10부[규격: A3, 420mm × 297mm]
다. 전자파일: 지정된 파일명으로 작성 후 USB로 제출

전자파일(PDF 등) 제출 목록	
구분(파일 양식)	지정 파일명
구비서류 스캔본(PDF)	00_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_접수번호(응모신청 시)
설계도면(PDF)	01_설계도면_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
설계도판(PDF)	02_설계도판_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
투시도 (JPG, PNG 등 300dpi 이상 이미지 파일)	03_조감도_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_대표 이미지
	04_투시도_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_외부1
	05_투시도_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_내부1

※ 조감도는 대표이미지 1컷, 외부/내부 투시도 각 1컷 총 3컷 이상 제출한다.

5) 유의사항

- 가.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응모 작품 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한정한다.
- 나. 설계공모 참여신청서와 제출до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 다.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설계기간 동안 적용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출품을 백색종이로 포장(도면/도판 개별포장, USB 별도제출) 후 밀봉하여 제출한다.
 - ② 별도 표기가 없는 규격(우편)봉투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A4)를 넣어 봉인한 후 설계도면과 함께 1개의 묶음으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 ③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 ④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 ⑤ 제출도서는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스프링, 클립 등 불가)
 - ⑥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함께 포장된 규격(우편)봉투(응모자 정보 봉인)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3. 제출도서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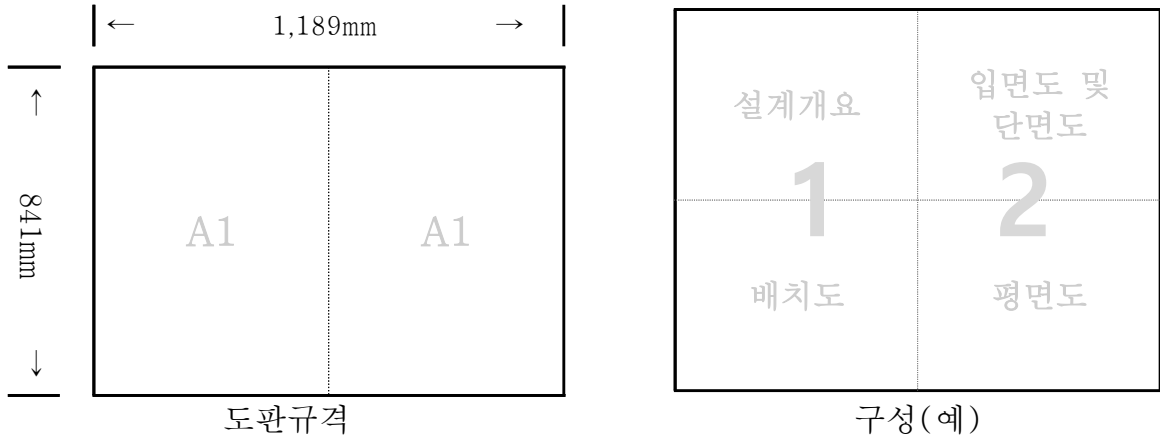
○ 공통사항

- 1) 모든 제출도서는 백색용지(백상지)로 통일하고, 도판 및 제출도면의 색채 표현은 가능하다.
- 2) 축척과 방위는 도면의 검토 및 해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도에는 반드시 표기한다.
- 3) 제출물에 사용하는 모든 글꼴은 한글 '나눔고딕', 영문 'arial'로 통일한다.
- 4)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5)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영문이나 한문 등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되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 6) 제출된 도서는 수정·변경·보완 할 수 없다.

○ 설계도판

1) 도판은 A1(가로 594mm × 세로841mm) 패널 2매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다.

- 도판의 규격 및 구성(예시) -



- 2) 도판은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mm 압축 스티로폼패널(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3) 도판에 사용하는 축척은 임의로 한다. 다만, 배치도와 평면도는 1/200으로 한다.
- 4) 도판에 사용하는 글꼴은 국문 '나눔고딕', 영문 'arial'을 사용하며 제목 40point, 부제목 25point, 설명 15point로 표현한다.
- 5) 작품 심사 시 게시되는 도판의 내용은 배치 조합은 작품의 설계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다음의 항목을 응모자가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가. 설계개요

건물, 마감, 설비, 주차, 조경 및 시설개요 등을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작품의 핵심 개념 등에 대한 사항을 표기

나. 조감도 또는 투시도, 계획개념도(축척: 임의)

3D모델링 프로그램만을 사용(플러그인 렌더링프로그램 또는 그 외 포토샵 등 이미지프로그램 사용 불가)하여 작성

※ 렌더링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D모델링 원본파일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 배치도(축척: 임의)

시설배치, 도로, 녹지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 배치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라. 층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축척: 임의)

지상1층 평면도의 경우 대상지 내외의 상황(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함께 표현하며, 입면도와 단면도는 각 2면 이상 제시한다.

마. 동선 및 주차계획

이용자의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주차장 계획의 전체개념 및 진·출입·주차 동선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바. 기타

응모자가 설계의도의 표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디자인 프로세스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을 필수항목의 누락이 없는 한 자유롭게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설계도면

- 1) 규격: A3(가로 420mm × 세로 297mm)크기로 좌측을 철하여 제출
- 2) 분량: 표지 및 간지 포함 20매 이내(단면 인쇄)
- 3) 지질: 백상지 [표지(240g, 코팅지 사용가능), 내용지(100g, 코팅지 등 사용 불가)]
- 4) 쪽 번호: 표지 및 간지는 쪽 번호 계산에 포함하되 기입하지 않으며, 표지 다음 인쇄면부터 우측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 '2'부터 차례로 적는다. 예시) (표지) → 2 → 3 → (간지) → 5
- 5) 작성내용 및 순서

제출도서는 가급적 아래 제시된 순서를 지켜 작성하되, 설계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단, 제시된 항목은 누락이 없어야 함)

가. 표지: “강북패션플랫폼 건립”만 기재

※ 글자만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하고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나. 목차

다. 설계개요

- ① [서식 7]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 ② [서식 8]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라. 대지현황분석

마. 건축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바. 건축계획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2면 이상, X축→Y축 순)

사. 재료계획(실/내외 주요 마감재료 구상)

아. 조경 및 외부공간, 구조, 토목, 기계·전기 설비 구상

자. BF(Barrier Free)인증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관련사항

차. 친환경계획,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계획

카. 면적 산출표(건축면적, 각 층별 면적)

타. [서식 9] 관련법규 검토서

파. [서식10] 추정 공사비 개략내역서

하. 기타(설계도판에 제시된 계획도는 모두 포함한다.)

4.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등록한 자는 다음의 도서류를 참고용으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분야	종류	배포/열람	배포시기/열람 장소
설계공모	건축설계공모지침서	배포	공고 시
	관련서식	배포	공고 시
	과업내용서	배포	공고 시
대지정보	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온라인, 상시)
	수치지형도	열람	국토지리정보원(온라인, 상시)
	연속지적도	열람	
	현황 측량 종합 성과도	배포	참가등록 마감 후
용역수행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열람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자료실(온라인, 상시)
	분야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열람	
기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열람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문화 > 자료실(온라인, 상시)

5. 심사 및 입상작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원칙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총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2조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 심사위원은 분야별 후보자 명단(3배수 이상) 구성 후 무작위 추첨에 의해 연락순번을 결정 하고, 순번에 따라 연락 후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함

2)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이준석	명지대학교 교수	
2	류숙희	홍익대학교 교수	
3	문종로	종로건축사사무소 대표	
4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5	김희옥	에이텍건축사사무소 대표	
6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7	임수현	Y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 교수)	권혜주	삼육대학교 교수	
(예비 건축사)	장대환	학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모든 심사위원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 제10조를 만족함

※ 심사위원 개인 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 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서울에 공지 예정

3) 심사위원장 선출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개최

1)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이상 참석 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가.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되는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심사과정은 유튜브(강북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다.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사기준(투표제를 원칙)**

1) 당선작 선정에 위한 심사방식과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점수제)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투표제)으로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아래 배점기준 등을 활용한다.

2) 심사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20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30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30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15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3) 절차기준

가.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심사제외 작품 및 그 사유를 심의하여 심사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심사제외 대상으로 의결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전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감점대상 작품 및 그 사유를 심의하여 감점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사업 특성에 따라 당선작의 선정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라. 점수 평가 시 심사위원회는 채점대상 작품에 대하여 배점기준에 의거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작품심사결과를 결정한다.

마. 투표제 평가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충분한 토의에 의하여 투표안건(당선작 선정, 입상작 선정, 입상작 순위 선정 등) 및 표결방식을 결정한다.

바.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결과'와 '실격/감점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입상작을 최종 결정한다.

4) 항목별 평가기준(채점제)

가. 채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후 항목별 평균점수와 감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다. 상대평가 등급은 '수,우,미,양,가'로 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에 대해 10% 차등채점(수 100점, 우 90점, 미 80점, 양 70점, 가 60점)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아래와 같다.

심사작품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1	3	6	3	1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지침 제8754호, 2020.11.10.시행) [별표기]을 준용하며, 심사 작품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지침을 준용한다.

○ 심사결과 발표(2024년 12월 23일 예정)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일괄 개제(발표일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입상작품 수 및 보상

1) 입상 작품 수 및 보상

가. 당선작: 1점(설계용역 수급권 부여)

나. 입상작: 응모작 수(심사제외 작품은 응모작 수에서 제외)에 따른 입상작 수 및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상급 지급기준		비 고
응모작 수	보상대상 수			
2개 이하	1	보상예산의 3분의 1	(우수작)	16,500,000원
3개	2	보상예산의 10분의 4	(우수작)	19,8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3	(가 작)	14,800,000원
4개	3	보상예산의 10분의 4	(우수작)	19,8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3	(가작 1)	14,8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2	(가작 2)	9,900,000원
5개 이상	4	보상예산의 10분의 4	(우수작)	19,8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3	(가작 1)	14,8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2	(가작 2)	9,9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1	(가작 3)	4,900,000원

2)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기준

○ 심사제외(실격)

- 1) 작품접수 시 제출토록 한 응모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제출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특정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 규격을 위반한 도판 등)하거나, 심사 전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당선(입상)한 이력이 있는 작품(심사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선·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 4) 감점기준에 따른 작품 사전검토결과 감점의 총합이 -3.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제외 대상이 된다. 감점처리 여부는 사전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처리의 적정성을 심의 후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하며, 이에 따라 심사제외 여부가 확정된다.
- 5) 확정된 감점의 총합이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작품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신중한 토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감점기준에 따라 심사제외 대상이 된 작품을 심사제외하거나 또는 심사제외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며, 그 사유는 의결서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 감점

- 1) 감점기준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검토 후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처리 적정성을 심의하고, 확정된 감점사항은 평가방식에 따라 적절히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 2) 감점기준

■ 법규위반

항목	감점	감점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	-2.0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확정된 감점사항을 작품 심사결과에 반영 / 총 감점점수가 3점을 초과할 경우 심사제외 대상 (심사위원회 의결로 확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	-2.0	
건축선 위반	-2.0	
기타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0	
부지 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면적을 초과 설계한 경우	-2.0	
직통계단, 조경면적 등 기타 건축관계법규 위반	-1.0 / 건	

■ 지침위반

항목	감점	감점확정
기준 연면적 5% 초과	-2.0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확정된 감점사항을 작품 심사결과에 반영 / 총 감점점수가 3점을 초과할 경우 심사제외 대상 (심사위원회 의결로 확정)
추정공사비 초과	-1.0	
제본방법 미준수	-0.1	
설계도면 기준매수 초과	-0.1 / 매	
설계도면 제출부수 부족	-0.1 / 부수	
기타 지침위반	-0.1 / 건	

7.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8. 기타

○ 당선자의 의무

-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용역 수행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으로 본 사업 또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입상작 보상기준 중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액 이상을 보상한다.

가. 사업의 취소

나. 당선작 결정 후 1년 이상 용역발주(계약) 지연

- 3) 당선자는 이 지침서와 함께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설계해야 한다.
- 4)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분야의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가.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한 업체

나.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5)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였거나 기술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색채디자인, 음향,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책임기술자로 참여시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6)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저작권

- 1)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고 당선(입상)작은 당선(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 2) 응모 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작품반환

- 1) 응모작품은 당선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 2)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응모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 작품 전시

필요 시 당선(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당선자가 당선자의 귀책이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의 기 수령 보상금은 반환한다.

○ 설계 의도의 구현

- 1) 당선자는 설계도면 납품 이후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시공 및 유지관리 되도록 확인·해석·자문하여야 한다.
- 2)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비용은 설계의도 구현 대가요율(안)에 따르며, 산정된 대가에 따라 공사 발주시점에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한다.

○ 유의사항

-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2)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기타 설계공모 및 설계관련 지침

-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 2) 발주기관등은 재공고 후에도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3) 당선(입상)작의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 시행)'을 적용한다.

9. 각종서식

-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서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 [서식 4] 보안각서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식 6]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 [서식 7]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 [서식 8]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서식 9] 관련법규 검토서
- [서식10] 추정 공사비 계략내역서
- [서식11] 보상금 지급요청서
- [서식12] 심사위원 제척 신청서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 설계사무소	업체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체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강북구청에서 시행하는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의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두 업체 이상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 제출 시 공동응모자란에 기재함

2024. . .
신청인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설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2. ○○○회사(대표자: 소재지:)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2. ○○○회사(대표자: 소재지:)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전기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업종 \ 구성원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전 기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인)

○○○ (인)

대 표 자 선 임 계

○○○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서 시행하는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설계사무소 ○○○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보안각서

□ 용역명 :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용역

상기 용역 및 설계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제공 받은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누설 또는 설계도면 등을 타 용도로 사용 시에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명 칭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m ²	
	도 로 현 황		
	연 면 적	m ²	
	건 축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외 부 마 감			
설 비 개 요			
주 차 개 요			
조 경 개 요			
기 타 사 항			

[서식 8]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m ²)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9]

관련 법규 검토서

법규명 및 조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10]

추 정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

공 사 명 :

(단위:천원)

구분	공 종 명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 당 금 액	구 성 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철거공사(폐기물처리포함)							
합 계							
제 경 비							
부 가 가 치 세							
총 공 사 금 액							

[서식11]

수 신 : 강북구청

참 조 : 건축과

제 목 :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요청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아 래 -

가. 공모명: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

나. 상금(우수작/가작) : 금0,000,000원

다.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라. 예금주 :

2024. . .

신 청 인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신청서

□ 설계공모명: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설계공모

□ 기피 및 회피위원

연 번	이 름	소 속	기 타

※ 증빙자료 첨부

□ 기피 및 회피 사유

-

2024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

연락처 :

직 위 :

이 름 :

강북구청장 귀하

Ⅱ. 설계지침

1. 계획 개요

○ 계획 내용

- 1) 본 사업은 강북구 의류봉제업의 거점공간으로의 역할과 그에 따른 소공인 한계 극복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스마트 제조장비 지원과 역량 강화교육, 제품개발, 판로개척,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한 소공인 성장을 지원하여 강북구 특화산업에 대한 자생력 및 지속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제소공인의 패션 제작(Creative), 창업(Start-up), 자료(Archiving)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강북패션플랫폼(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
- 2) 설계공모의 목적은 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소공인에게 필요한 장비 및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소공인, 예비창업자 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3) 공공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개방적이며,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도입하여 공간을 계획한다.
- 4) 본 공모는 일반설계 공모이며,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 현황

○ 대상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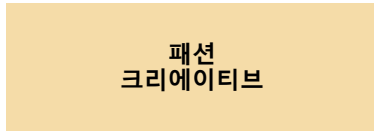
-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나길 6
- 2) 대지면적: 485.3㎡
- 3)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4)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1~5층
- 5) 연 면 적: 1,297.0㎡ (주차장면적 포함), 연면적은 ±5% 범위에서 조정 가능

○ 현장사진



3. 실 구성 및 소요면적

- 조닝(Zoning): 강북패션플랫폼으로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영역을 구분하여 계획 시 반영 할 것



- 1) 크리에이티브: 소공인 간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과 패션에 중점을 둔 작업공간 및 교육공간
- 2) 스타트업: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창업공간으로 트렌드와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지원공간과 오픈형과 독립형으로 이루어진 업무공간
- 3) 아카이빙: 특화도서 30%를 비치하여 패션(봉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자 소공인과 지역주민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아카이빙 공간

○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

구분		프로그램	소요면적 (단위: m ²)	세부내용
지하1층 ~ 지상3층	주차장, 기계실 등		-	법정 6대(200m ² 당 1대) 장애인주차구획 1대 포함하여 설치할 것
	패션 크리에이티브 (제작·전시· 교육·운영)	자동재단실, CAD실	170.0	
		공동작업장	90.0	
		특수장비실	30.0	
		전시라운지	20.0	개방형
		쇼윈도	10.0	
		휴게실	-	
		창고	-	
		교육실	42.0	최대수강인원: 24명 CAD 등 스마트 기술 교육 컨설팅 및 필요 서류작업 교육
		사무실	39.5	상주인원: 7명
		강사대기실	-	수용인원: 1명
		회의실	-	수용인원: 10명
		스튜디오	-	
교육라운지	90	개방형		
지상4층	패션 스타트업	스타트업라운지	60.0	1인 업무공간 및 교육공간, 개방형
		2~4인 입주기업실	26.0	*13m ² x 2개실
		관리사무실	10.0	상주인원: 2명
		회의실	16.0	
		AI디자인실	18.0	
		가상피팅룸	12.0	
지상5층	패션 아카이빙	아카이빙	90.0	상주인원: 1명
		사서업무공간	10.0	상주인원: 1명
		북카페	15.0	상주인원: 1명
		주민자치실	11.0	상주인원: 1명
공용면적			-	홀 및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 운영(개방)시간: 평일 09:00~18:00(각 시설별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운영 가능)

○ 설계의도에 따른 층별 시설구성의 변경 가능범위

- 1) 면적: 각 프로그램별 면적은 ±5%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단,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2) 층별시설: 지상 4층의 패션 스타트업 시설과 지상 5층의 패션 아카이빙 시설은 변동될 수 없으며, 패션 크리에이티브의 프로그램 층별 변경은 설계의도에 따라 가능하다.
- 3) 프로그램의 추가/삭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지침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 4) 공용면적
 - 가) 전체연면적 및 제시된 프로그램 면적을 고려하여 공용면적을 산정한다.
 - 나) 공용면적은 시설의 이용과 편의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4. 기본 설계 지침

○ 공통사항

- 1) 강북 특화산업인 패션(봉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소공인, 예비창업자, 지역 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기술적,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역할과 봉제소공인의 패션 제작 (Creative), 창업(Start-up), 자료(Archiving)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강북패션플랫폼(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한다.
- 2) 해당 대지 내 고저차 및 인접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 3) 기타
 - 가. 각종 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계획한다.
 -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성능 관련 계획을 현실성 있게 계획한다.

○ 일반 설계지침

1) 배치 및 외부공간, 동선계획

- 가. 대지형태 및 일조에 의한 이격거리, 도로현황, 인접현황(담장 등), 레벨차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건물을 배치한다.
- 나. 장애인주차구획(1대)은 지상에 설치하며, 합리적인 주차계획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다. 봉제·물류·상호대차 등 이륜자동차, 차량을 통한 하역을 고려해 지상 1층에 하역공간을 확보한다.
- 라. 외부 하역공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효율적인 하역동선을 계획한다.
- 마. 추후 미아9-2 재건축으로 인해 도봉로 20나길이 확폭(15M) 예정이므로 저층부 연계 등을 고려한다.
- 바. 일조에 의한 이격거리로 생기는 옥상공간은 옥상정원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2) 평면 및 공간계획

- 가.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는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 나.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분리 배치하여 상호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다. 평면계획 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합리적인 동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라. 이용자의 편의 및 원단 운반 등을 고려해 15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장애인용)로 계획해야 하며, 편의를 고려하여 바닥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
- 마. 공용공간의 경우 창의력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가구 배치와 인테리어로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바.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실내의 칸막이는 가변형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3) 프로그램별 평면 및 공간계획

가. 패션 크리에이티브(소공인복합지원센터)

- ① 자동재단실의 경우 스마트장비 반입을 고려하여 개구부(2,450*2,350mm)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 ② 스마트장비(CAM 자동재단기, 연단테이블, 연단기) 2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간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며, 사용성을 고려하여 장비 주변으로 최소 600mm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③ CAD실은 자동재단실 내에 배치하며, 컴퓨터는 2대 이상 설치하고 개방형 또는 분리형 중 이용자의 편의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④ 휴게실은 자동재단실 또는 공동작업장(특수장비실)과 인접 배치하며, 개방형 또는 분리형 중 이용자의 편의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⑤ 공동작업장의 경우 창의적인 협업과 개인작업의 유연성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특수장비실과 인접 배치하여 계획한다.
- ⑥ 교육실의 경우 최대 24명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강사대기실을 인접 배치하여 계획한다.
- ⑦ 전시라운지의 경우 개방형 공간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계획하며, 쇼윈도와 인접 배치하여 계획한다. 또한 쇼윈도는 외부에서 인지가 잘 되도록 전면도로변으로 배치를 고려한다.
- ⑧ 많은 이용자와 원단 운반 등을 고려하여 공용재단실 및 공용작업장, 교육실은 혼잡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⑨ 자동재단실 및 공동작업장, 교육실은 작업과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밝은 조명(조도 1,500lux 이상)으로 계획하며, 다른 실과 다른 층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⑩ 교육라운지에 직원 및 교육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전(싱크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패션 스타트업(창업지원센터)

- ① 개방형 업무공간과 독립형 업무공간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스타트업 라운지의 경우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탕비공간을 함께 계획한다.
- ③ 2~4인 입주기업실 및 회의실은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하게 계획한다.
- ④ 관리사무실은 2명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⑤ AI디자인실, 가상피팅룸의 경우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접 배치한다.
- ⑥ 스타트업라운지에 직원 및 교육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전(싱크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패션 아카이빙(작은도서관)

- ① 1층 로비 또는 방풍실 내에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서가의 경우 1,000권 규모의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며, 도서의 30%는 패션전문도서로 비치한다.
- ③ 패션 아카이빙의 경우 개방형 공간으로 디자인하며 자유로운 가구배치를 통해 다양한 열람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④ 패션 아카이빙 내 컴퓨터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⑤ 대출 등 안내할 수 있는 데스크 공간을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도서관리시스템(도서RFID, 도난방지시스템 등)을 계획할 것
- ⑥ 사서업무공간의 경우 1인용 업무공간과 캐비닛, 프린트 또는 복합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⑦ 북카페는 커피나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⑧ 주민자치실의 경우 4~5인 회의 테이블과 1인 업무공간을 확보하며, 패션 아카이빙과는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4) 입면계획

- 가. 설계의 방향과 기본개념을 반영해 디자인하며, 강북구의 지역적 특성 및 복합시설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창의적인 입면을 계획한다.
- 나. 건축물의 인지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단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필요 시, 난간벽 활용 가능(벽면적의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 다.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창호는 채광 및 장비 반입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단면계획

- 가.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각종 기자재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나. 천장고는 기능과 설비를 고려해 적정한 높이를 산정하여 계획한다.
- 다. 공용재단실 등 환기설비가 필요한 시설은 덕트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인테리어계획

- 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서 패션이라는 정체성과 부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나. 전시라운지는 패션플랫폼의 압축된 공간으로 패션을 주제로 소공인과 창업자,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 다. 패션 크리에이티브의 작업공간은 소공인의 능력이 오를 수 있도록 차분한 인테리어로 계획하며, 사용성 등을 고려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라. 교육라운지 및 패션스타트업 공간은 아이디어와 창의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마. 패션 아카이브는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로 제공하며, 다양한 열람형태로 디자인한다.
- 바. 패션도서 열람공간과 일반도서 열람공간을 구획 없이 개방적으로 계획하되, 가구나 인테리어를 통해 공간별로 특성화하여 디자인한다.